

경찰, '깜깜이 수사' 바꾼다

피의자·변호인에 수사 진행 실질 통지 방안 강구 구속영장 신청·보완수사 지휘·내사종결 등 통지 “수사관행 개선·방어권 보장”...수사권 조정 포석

경찰이 변호인에게 구속영장 신청 등 주요 수사 상황을 통지하기 위한 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수사권 구조 조정으로 1차적 수사권을 행사하기에 앞서 피의자 방어권 강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조치가 나선 것이다.
30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은 구속영장 신청과 그 과정 및 결과, 종결 사건 처리 결과 등 경찰 단계 형사절차 진행 상황을 피의자와 변호인에게 실질적으로 통지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는 앞서 경찰청 인권위원회가 피의자의 수사절차상 변호인 조력을 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변호인에 대한 통지를 확대하라는 등의 권고를 한데 따른 것이다.
기준에 경찰은 사건 당사자에 대해 수사 단계별로 진행 상황을 일정 부분 통보했다.
변호인의 경우에는 참여 신청이 있는 경우에 대해 조사 일정 협의 등 제한적으로 사건 관련 고지를 해왔다.
향후 경찰은 수사 절차 가운데 고소·고발 사건 배당, 구속영장 신청사

실과 결과, 구속 전 피의자신문(영장실질심사) 일정과 결과, 송치·이송·내사종결·즉결심판 등으로 종결된 사건처리 결과 등을 변호인에게 통지할 계획이다.
또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검찰이 기각 또는 반려한 경우, 보완수사를 지휘한 경우에도 이 같은 사실을 피의자와 변호인에게 통지하는 등의 체계를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기준에는 변호인들이 구속영장 신청 사실 등을 알았기 위해 치열한 물밑 작업이 필요했다”며 “영장의 청구 또는 기각 결정까지 과정에서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할 수 있는 체계가 마련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찰은 통지 확대도 수사편의와 구속영장 발부를 추구하던 기존의 수사관행을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통지에 따른 방어권 강화로 구속영장 신청 등이 보다 엄격하게 이뤄질 환경이 조성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이번 조치는 당사자 주의 소송 구조에서 특히 변호인 조력 및 참여 부분이 강조되는 최근 형사 사법 환경의 방향성과도 궤를 같이 하고 있다.
아울러 피의자 방어권과 변호인 참여권을 보장하는 제도를 두는 것은 향후 경찰이 수사 주도권을 주장할 여지를 남길 수 있는 조치로도 평가된다.
경찰 관계자는 “구속영장 신청 등에 대한 통지를 제도화하게 되면 투명하고 공정한 법조 문화를 형성하고 경찰 수사의 신뢰성도 높아질 것으로 본다”며 “불구속을 원칙으로 면밀하게 수사하고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언급했다.

뉴시스

학교·노인요양시설 등 가연성 외장재 사용 금지

앞으로 학교·병원 등 어린이와 노인 환자가 사용하는 피난약자 건축물에는 가연성 외장재 사용이 금지된다.
국도교통부는 30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건축물 화재안전기준을 강화한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가연성 외부 마감재 사용금지가 확대된다.
이제까지 건축물 높이가 6층 이상(22m 이상)인 경우에 적용됐으나 앞으로 3층 이상(9m 이상)으로 확대된다. 피난에 오랜 시간이 걸리는 영유아, 어린이, 청소년, 거동이 불편한 노인 환자 등이 주로 이용하는 학교, 병원 등 피난약자 건축물은 높이와 상관없이 전면 제한된다.
필로터 주차장 건축물은 외벽과 상부 1개층에 화재에 강한 마감재료를 사용해야 하고 내부 출입문은 방화문을 설치해야 한다. 또한 지금까지 3층 이상과 지하층에만 적용하고 있는 층간 방화구획 기준도 매 층마다 설치해야 한다. 다만 1층과 2층이 식당 등 동일한 용도이고 화염이 확산되지 않도록 구획한 경우는 제외된다.
건축물 계단 설치 기준도 바뀐다. 2개 계단은 건물 평면 전체의 최대 대각선 거리의 2분의 1 이상 거리를 두고 설치해야 하며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거실로부터 30m 이내에 만들어야 한다.
이행강제금 부과기준은 상향 조정된다. 화재 및 내진 기준을 시정하지 않는 경우 현재보다 최대 3.3배 많은 수준(시가표준액의 3%→10%)을 내야 한다.



폭염이 물러가다 대전과 충남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내려진 30일 오후 대전 유성구 복용송마장에서 말이 시원하게 샤워를 하며 더위를 식히고 있다.

“광주클럽 사고, 리모델링 법·제도 부실 탓...개선해야”

건축사협회, 건축사 도면·전자등록시스템 등 촉구
27명의 사상자를 낸 광주 클럽 복층 붕괴 사고의 원인이 무자격자에 의한 불법건축 때문인 것으로 확인된 가운데 건축사들이 내부 리모델링에 대한 법·제도적 장치가 부실하기 때문이라며 이를 개선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대한건축사협회는 30일 보도자료를 통해 “광주 클럽 복층 붕괴 사고와 지난해 중로 고시원 사고는 내부 리

모델링의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협회는 “내부 리모델링은 분명한 법적 행위로 건축법과 구조, 소방 등 건축 전반의 조정·감독은 종합적인 능력 조정자인 건축사의 역할”이라며 “공식 국가자격자인 건축사들이 도면 작업을 하고, 지자체 등에 등록할 수 있는 전자시스템을 만드는 등 법·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뉴시스

온열질환 119 구급출동 3년 간 4152건

소방청 “야외활동 자제하고 물 자주 마셔야”

무더운 날씨 탓에 온열질환이 발생할 가능성도 높아져 주의가 요구된다.
30일 소방청에 따르면 2016~2018년 3년 간 온열질환자 처치를 위해 119구급대가 출동한 건수는 4152건에 이른다. 처치 후 병원으로 옮겨진 건수도 3925건(94.5%)이다.
연도별로는 사상 최악의 폭염을 기록했던 지난해 2609건 출동해 2426건(93.0%) 병원으로 이송됐다. 지난해 전국 폭염일수는 314일이었다.
2016년에는 794건 출동해 768건(96.7%), 2017년에는 749건 현장에서 응급처치 후 731건(97.6%) 병원으로 옮겼다.
119구급대 출동과 병원 이송 건수는 무더운 여름철인 7~8월에 집중됐다.
3년 간 월별 출동 비율은 7월 47.9%(1991건)로 가장 높았고, 8월 45.3%(1881건)까지 더하면 7~8월 비율만 93.2%에 달한다. 6월 4.9%(204건), 5월 1.1%(45건), 9월 0.7%(31건)

이 뒤를 이었다.
월별 이송 건수도 7월 47.6%(1870건)로 연중 가장 높았다. 뒤이어 8월 45.6%(1791건), 6월 4.9%(191건), 5월 1.1%(43건), 9월 0.8%(30건) 순이었다.
올들어 이날 26일까지는 230명의 온열질환자가 병원으로 이송됐다.
온열질환은 열로 인해 발생하는 급성질환을 말한다. 고온 환경에 장시간 노출되면 두통과 어지러움, 근육경련, 피로감 등의 증상을 보이고 방치할 경우 생명이 위태로울 수 있다.
박세훈 소방청 중앙119구급상황관리센터 구급정책협력관(응급의학 전문)은 “폭염 시 야외활동을 자제하고 시원한 물을 자주 마시는 것만으로도 예방할 수 있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소방청은 온열질환자 증가에 대비해 전국 1만882명 규모의 119폭염구급대를 운영 중이다.

뉴시스



이런판결 저런판결

‘재해사망’ 軍가족은 병역혜택 제외...헌재 “병역법 합헌”

재해사망군인 가족은 순직자와 달리 병역감경 대상이 아니라고 규정한 현행법 조항은 합당하다는 판단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최근 A씨가 제기한 병역법 시행령 130조 4항에 대한 위헌확인 헌법소원 심판에서 재판관 2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현 군 복무 중 사망해 재해사망군인 판정을 받았다. 이후 A씨는 병역법 시행령 130조 4항 병역감경 대상에 전사자·순직자 등의 가족은 포함하면서 재해사망군인은 제외한 건 평등권 침해라며 이 심판을 청구했다.
헌재는 A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헌재는 “순직자 가족 병역감경제도는 국가를 위해 희생한 사람과 가족을 예우하고 남은 가족의 생활안정을 위한 것”이라며 “똑같은 위험성이 있는 국방의 의무를 예외 없이 부과하는 건 가족에게 거듭된 희생

을 요구하는 것이어서 가혹하다는 입법적 고려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국가유공자법에 따르면 순직군인은 보훈보상자법상 재해사망군인에 비해 국가에 공헌한 정도가 더 크고 직접적”이라며 “그에 합당한 예우와 보상을 할 필요가 있고 국가유공자법과 보훈보상자법에서 구제적인 보상이나 지원을 달리 정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 “특정인의 병역감경은 다른 이에게 부담을 전가해 대상자 선정 범위를 최소화해야 한다”며 “해당 조항은 A씨의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다만 이산에·이은에 재판관은 “가족들의 생활 안정 필요성은 순직군인이나 재해사망군인이나 다르지 않다”며 “군대 직무수행 중 사망한 것이라면 성격이 어떠한 군대에 상존하는 위험으로 사망했다는 본질은 같다”는 반대의견을 냈다.

뉴시스



모두, 안녕하세요?

우리 민력어는요... 자태치로죽에 있습니다.

처음엔 많이 놀랐지만, 영유아건강검진으로 알게 돼서 부모로서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지 앞으로 어떤 계획을 세워야 하는지 잘 알게 되었습니다.

영유아건강검진 덕분에 안녕이란 말을 다시 돌아봅니다.

대한민국 부모님들, 다들 안녕하시죠?

영유아건강검진은 생후 4개월부터 71개월까지의 모든 영유아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본문에는 검진기관이 한정되어 있으나, 여기까지 검진 받으세요.

탄생의 순간부터 평생 동안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가 함께 합니다

국가건강검진

일반 건강검진

생애전환기 건강검진

구강검진

암검진

영유아 건강검진



보건복지부



h-well 국민건강보험